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5
----------	---

제출일자 : 2006. 7. 18
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2006. 2. 6부터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」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골자

### 가.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센터장 선임방법(안 제2·3조)

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·장려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하고, 센터장은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직영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선임하고, 기타의 경우에는 센터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함

### 나.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5·6·7조)

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,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영할 수 있도록 함.

### 다. 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·운영(안 제9·10조)

센터에 센터장을 위원장으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하도록 함

### 라.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(안 제13조)

자원봉사자 보호를 위하여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, 같은법 시행령 제10·14·1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 : 2006. 5. 18 ~ 6. 2(15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마. 기 타 : 조례표준안 시달(시 자치행정과 - 5644, 2006. 4. 27)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##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구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·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센터의 설치)**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 이라 한다)은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·장려하기 위하여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센터(이하 “센터” 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
**제3조 (센터장의 선임)** ①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 이라 한다)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구청장이 선임하고,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.  
②센터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된 센터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4조 (센터 사무국)** ①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센터에 사무국을 둔다  
②사무국에는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.

**제5조 (센터의 운영)** ①구청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

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운영할 수 있다.

②구청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하며, 센터의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,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.

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「민법」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
**제6조 (위탁계약의 해지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
2.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
3.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

**제7조 (센터에 대한 지원)**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8조 (예산 및 결산 등)** ①센터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2월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
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·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센터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·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 관련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9조 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** ①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 센터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센터의 기본적 운영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④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, 위원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대표, 자원봉사활동 관계공무원,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. 이 경우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**제10조 (위원회의 운영)**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.

**제11조 (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)**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 안에서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2조 (경력인정 등)** ①구청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경력인정 등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**제13조 (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)** ①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」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구청장 또는 센터장은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와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2.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센터에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.
3. 센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, 가입 후 사고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②구청장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**제14조 (실비지급)**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**제15조 (시행규칙)**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설치된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.